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0일, 김은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은혜의원)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1. 제안배경

최근 승무원들이 비상문을 열고 항공기 날개 위로 올라가 사진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항공기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항공기 보안점검표에는 항공사가 내·외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내부점검을 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항공기 내·외부점검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으며,[1)]

김해 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용역업체 직원이 승객인 것처럼 탑승권을 임의로 발급받아 보안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안구역 무단 출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2)]

이에 개정안은 ①**출입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방해행위[3)]에 대해 인지하

1) 뉴스1, 「항공기 날개 위 인증샷…김은혜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2025.3.20.

2) KBS 뉴스, 「출입증 없이 무단 진입…"김해공항 보안 구멍"」, 2025.8.1.

3)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거나 공항운영자 등의 보고(제19조제1항) 또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33조의2제1항)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근거를 두며, ③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해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규정**을 신설하고, ④**처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항공사 보안·안전 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안, 배준영의원안)을 각각 심사[4]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5.9.25.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의 내용과 동일함.**[5]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9.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9.24.)

5) [221406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2025.9.25. 의결, 제429회 국회(정기회)제12차 본회의 2025.11.13. 부결

2. 보호구역 출입 허가 시 출입가능 범위 명시 및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개정안은 공항운영자가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방해행위에 대해 인지하게 될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생략)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신 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
<신 설>	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

현 행	개 정 안
	치의 이행 여부
<신 설>	3. 제17조의2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신 설>	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 설>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신 설>	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조사업무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현장점검 및 조사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점검·조사업무의----------

현 행	개 정 안
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점검·조사 결과----------.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점검·조사를----------점검·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계획을 점검·조사 대상자에게----------.----------점검·조사----------.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⑧ ----------점검·조사업무----------.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8항---------점검·조사를----------.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점검·조사

현 행	개 정 안
	업무----------.

가. 검토의견

(1) 출입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안 제13조제2항 신설)

먼저 출입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국제공항보호구역출입증규정」 등에 근거하여 대상자별로 보호구역 내 출입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출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6]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별 출입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 「인천국제공항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2조(출입구역의 구분) ① 사장은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의 출입구역은 별표1과 같이 출입구역별로 고유문자를 부여하고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사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증 발급시 개인별 직무수행 내용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출입구역을 부여할 수 있다.

【 출입증 발급 확인서(출입구역 구분) 】[7]

고유문자	출입구역	세부시설
A	관제시설 지역	관제탑, 계류장관제탑 관제실, AICC, 서울접근관제소,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비상접근관제소
B	항공기 탑승지역	여객터미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지역부터 항공기 탑승지점까지 출국지역(3층), 출입국 심사장 및 환승지역, 탑승동 출발 및 환승지역, 셔틀트레인지역, 국내선 출발지역 및 수하물 수취지역
C	수하물 수취지역	국제선 도착수하물 수취지역(1층), 입국심사 완료지역(2층)
D	부대건물 지역	관제송신소, 관제수신소, 왕산레이더, 제1/2신불레이더, 정보통신동, 주변전소A/B, TVOR/DME, VOR/DME, 제1/2계류장관제탑(관제실 제외), 동절기장비고D, 항공등화작업장, 화물배전변전소(일반변전소), 제2/3/4등화제어소(배전변전소), 동력동A/B/C, 기상레이더, 제2계기착륙표지소, 통신시설동
E	항공기 이동지역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여객/화물) 등을 포함한 항공기 이동지역, 이동지역주변 GSE도로, 수하물처리지역, 지하공동구, 소방대, 기상대본부, 동절기장비고A/B/C/E
F	화물터미널지역	화물터미널 전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

(2)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안 제33조 등)

개정안은 현행법상 항공보안 감독을 위한 **점검**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불법방해행위에 대해 인지하거나 공항운영자 등의 보고(제19조제1항)[8] 또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33조의2제1항)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이를 위한 자료제출의무, 합동조사, 시정조치 등 관련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7) 「인천국제공항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8) **「항공보안법」**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기 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이 발생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지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의 사실조사[9]와 같이,

개정안은 「항공보안법」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보안사고 조사규정을 마련하여 사고발생 경위 조사 및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이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의무 등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항공보안 감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는 ①보호구역 출입가능범위 명시와 관련하여 종사자별 보호구역 출입목적을 고려해 출입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보호구역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②보안사고 조사 근거 신설과 관련하여 출입국 심사 시간 등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수집이 원활해지는 등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고조사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

9)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현행법의 단순 오기 정비(안 제15조제3항 및 제8항)

개정안은 현행법의 인용조항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생 략)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항----------.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제7항----------. 1. ~ 4.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같은 조 “제7항”[10]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인용조항 단순 오기가 있었음.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10)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⑦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4.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개정안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10일 이내에 자율신고를 할 경우에 대한 면책규정을 실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신 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자는----------. ② ----------자의----------. ③ (현행과 같음)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⑤ (생 략)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법은 항공보안 위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징후를 미리 발견할 경우 승객 및 항공종사자 등 누구나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 자율신고**[11]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 비밀 유지, 공항운영자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12]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율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자의 실수로 승객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게이트를 통과한 보안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보안 담

1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Security)에 '각 체약국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밀보고제도(Confidential Reporting System)를 운영 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4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제도를 운영 중임.(항공보안 365)

12) 「항공보안법」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항운영자등은 소속 임직원이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 기관에서 은폐하려 한 사례[13] 등 관련자가 보안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위반 사실에 대해 자율신고를 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 관련 벌칙 등[14]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하여, 보안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처분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여 항공보안을 악화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자율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항에서 관련자의 실수로 인한 보안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항공 보안 관련 사고 예방 및 관련 보고를 통한 사고 대응의 신속성 및 효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하게 「항공안전법」에서는 누구든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안전사건 등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사람이 1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할 경우 고의·

13) 연합뉴스, 「위태로운 공항 보안…뚫려도 '쉬쉬', 신고해도 '딴청'」, 2025.2.27.

14)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중과실을 제외하고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제도를 두고 있음.[15]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는 신고활성화를 촉진하여 보안사고의 신속한 적발과 시정이 가능하며 자발적인 내부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15)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등(안 제50조 등)

개정안은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과 같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고,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⑤ ----------.

현 행	개 정 안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3.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6항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3조제5항에------점검·조사업무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의 외부점검, 객실 등에 대한 점검,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16]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의무가 있음.

개정안은 객실승무원이 내부점검 중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외부를 점검하는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항공기 내·외부점검이 미흡했던 사례 등[17] 항공기 보안점검 의무를 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통해 항공보안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18]과 유사한 취지에서 항공기 보안점검 미

---

16)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항공기 보안조치)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외부 점검
2. 객실, 좌석, 화장실,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
3. 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
4.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5. 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6.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7. 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보안조치
8. 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
9. 유효 탑승권의 확인 및 항공기 탑승까지의 탑승과정에 있는 승객에 대한 감독
10. 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 명령 절차 및 확인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탑승계단의 관리
2. 탑승교 출입통제
3.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
4. 경비요원의 배치

17) 뉴스1, 「항공기 날개 위 인증샷…김은혜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작성"」, 2025.3.20.

18) 현행법은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실시는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 등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의 정도 및 다른 처벌조항과의 균형성에 비추어 **보안검색 미실시 등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보안검색/보안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현행법 제2조제8호의 **"불법방해행위"**[19]**를 야기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하게 안전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손괴', '지반침하' 등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철도건설법」, 「지하안전법」등 입법례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20]

---

19)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명	위반내용	처분
철도건설법 제45조(벌칙)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하안전법 제51조(벌칙)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저수지댐법 제30조(벌칙)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연구실안전법 제43조(벌칙)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보안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소홀히하여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하는 규정으로 항공기 보안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제3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